

개호보험제도에 대하여

(만 40세가 되신 분에게)

개호를 사회에서 협력 지원하여 불안한 노후에 대비합시다

개호보험제도는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진행, 개호이직(가족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둠) 문제 등을 배경으로 개호를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에 창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628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정착되어 있습니다. 개호보험 가입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으로, 만 40세부터 만 64세는 자신도 노화로 인한 질병에 걸려 개호가 필요한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가 고령이 되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노후 불안의 원인인 개호를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는 만 65세 이상인 분(제1호 피보험자)과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의료보험 가입자(제2호 피보험자)로 나누어집니다. 제1호 피보험자는 원인을 불문하고 개호 필요 인정 또는 지원 필요 인정을 받았을 때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호 피보험자는 노화에 기인하는 질병(특정 질병※)으로 개호 필요(지원 필요) 인정을 받았을 때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 (제1호 피보험자)	만 40세부터 만 64세인 분 (제2호 피보험자)
대 상 자	만 65세 이상인 분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건강보험조합, 전국 건강보험협회,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등의 의료보험 가입자 (만 40세가 되면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만 65세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제1호 피보험자로 변경됩니다.) 
수급 요건	·개호 필요 상태 ·지원 필요 상태	·개호 필요(지원 필요) 상태가 노화에 기인하는 질병(특정 질병※)에 의한 경우에 한정.
보험료의 징수방법	·시정촌과 특별구가 징수 (원칙상 연금에서 공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징수 개시	·의료보험료와 합산해서 징수 (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상 사업주가 1/2을 부담) ·만 40세가 되는 달부터 징수 개시

※ 특정 질병이란

1 암(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식견을 바탕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	9 척추관협착증
2 류마티스 관절염	10 조로증
3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11 다계통위축증
4 후종인대골화증	12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5 골절을 동반하는 골다공증	13 뇌혈관 질환
6 초로기 치매	14 폐쇄성 동맥경화증
7 진행성 핵상마비, 대뇌피질기저핵변성증 및 파킨슨병	15 만성폐쇄성 폐질환
8 척수소뇌변성증	16 양쪽 무릎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하는 변형성 관절증

제2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

1.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의 제2호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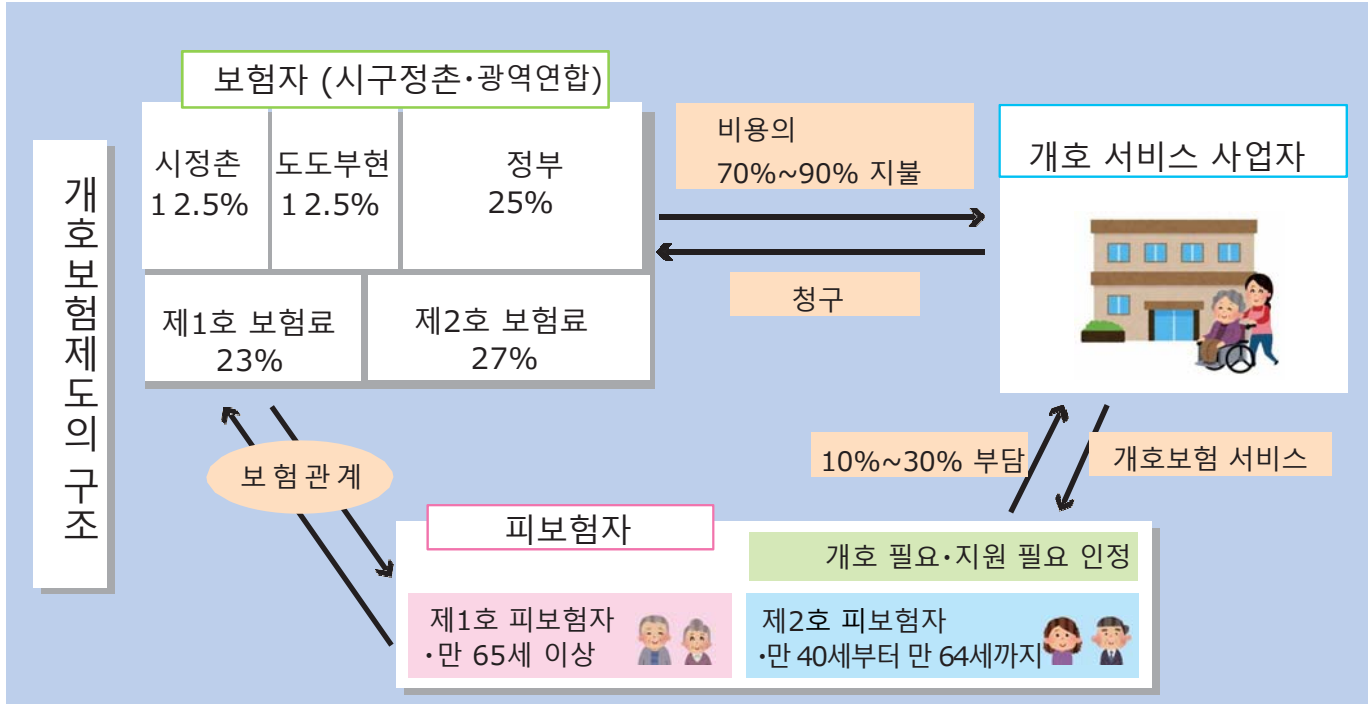
건강보험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개호보험료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합산해서 징수됩니다. 또한, 개호보험료는 의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원칙상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의 제2호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개호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합산해서 징수됩니다.

개호보험의 운영주체(보험자)와 재정

개호보험의 보험자란 시정촌과 특별구(광역연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광역연합)를 말합니다. 개호보험자는 개호 서비스 비용의 70%~90%를 지급함과 동시에,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개호보험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공비 50%, 보험료 50%(현재, 제1호 보험료 23%, 제2호 보험료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개호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이나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자택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방문개호	방문개호원(홈 헬퍼)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보살핌)나 조리, 세탁, 청소 등의 가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숙박하는 서비스	단기입소 생활개호 (쇼트 스테이)	시설 등에 단기간 숙박하면서 식사나 목욕 등의 지원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기능훈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개호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자택에서 요양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이 청결 케어 및 배설 케어 등 일상생활의 지원과 의사의 지시하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거주계 서비스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유료 양로원 등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상의 지원이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일상생활 및 개호에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휠체어, 침대 등)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계 서비스	특별요양 양로원	항상 개호가 필요하여 자택에서는 개호하기 어려운 분이 입소합니다. 식사, 목욕, 배설 등의 개호를 일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원칙상 개호 필요 3등급 이상이 대상)
통원하며 시설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통원개호 (데이서비스)	식사나 목욕 등의 지원이나 심신의 기능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기능훈련 및 구강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주간에 통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예의 '통원'을 중심으로 단기간의 '숙박'이나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을 조합하여 일상생활상의 지원 및 기능훈련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원재활 (데이 케어)	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등이 재활치료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심신기능의 유지·회복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시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정기적인 순회 및 수시 통보에 대한 대응 등,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타이밍에 유연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개호원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도 연계되어 있어 개호와 간호의 일체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 서비스의 이용 방법

자신이나 가족에게 개호(보살핌)가 필요하게 된 경우,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호 필요(지원 필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청하기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은 시구청촌의 창구에서 '개호 필요(지원 필요) 인정'을 신청합니다(지역포괄 지원센터(아래 참조) 등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에 제1호 피보험자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제2호 피보험자는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이 필요합니다.

②개호 필요 인정을 위한 조사, 판정 등의 실시

■ 인정 조사·주치의 의견서

시구청촌의 직원 등 인정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의 상황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질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은 전국 공통입니다. 또한 시구청촌에서 직접 주치의(담당 의사)에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심신의 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시구청촌에서 직접 의뢰).

■ 심사·판정

인정 조사의 결과와 주치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학식경험자로 구성된 '개호 인정 심사회'에서 심사하여,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지 판정합니다. 개호 필요도는 개호 필요 1~5등급 또는 지원 필요 1,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제2호 피보험자는 개호 필요(지원 필요) 상태에 해당하는 자로, 그 상태가 '특정 질병(P1 참조)'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③인정 결과의 통지

원칙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구청촌에서 인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④케어 플랜 작성하기

개호 필요 1~5등급으로 인정된 분이 자택에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재택 개호지원 사업자와 계약한 후, 그 사업자의 케어매니저에게 의뢰하여 이용할 서비스를 결정하고 개호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시설에 직접 신청합니다. 지원 필요 1·2등급으로 인정된 분은 지역포괄지원센터(아래 참조)에서 담당 직원이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개호 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⑤서비스 이용하기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과 '개호보험 부담비율증'을 제시한 후, 케어 플랜에 입각한 재택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케어 플랜에 입각한 이용자 부담은 비용의 10%~30%※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총소득 금액 160만 엔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원칙상 20% 부담, 220만 엔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원칙상 30%를 부담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10% 부담)

지역포괄지원센터란

1. 지역 사람들의 건강, 안심,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역의 고령자가 건강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시구청촌이나 시구청촌이 위탁하는 조직에 의해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구청촌에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호에 관한 불안이나 고민에 대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지원은 무료입니다. 시구청촌의 홈페이지 등에서 거주 지역의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포괄지원센터의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가족의 생활이나 개호에 관한 사항 및 직장일과 개호 병행에 대한 고민 등 폭넓게 대응합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에는 의료, 복지, 개호의 전문가인 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 케어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살려 서로 연계하면서 상담 내용에 따라 제도의 개요 설명이나 상담창구의 소개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개호 서비스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지역 고령자의 건강증진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도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개호에 대해 불안한 점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거주하는 시구청촌의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호이직 제로를 위해

현재, 개호를 이유로 이직(직장을 그만둠)하는 사람이 매년 약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약인 총 활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호 서비스의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직장의 환경 개선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020년대 초반까지 개호이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개호가 병행 가능한 제도

육아·개호 휴직법에 규정된 제도에 대해 일부 소개합니다. 법의 상세내용은 '육아·개호 휴직법의 개요'(상세내용은 '주요 참조사이트 URL' 란에 기재)를 참조하시거나,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실)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근무하시는 직장의 제도에 대해서는 근무 직장의 인사·총무 담당에 문의하십시오.

1. 개호 휴직 제도

개호가 필요한 가족 1명에 대해 통산 93일까지 3회를 상한으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호 휴직 기간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임금의 67%가 지급됩니다(개호 휴직 급부금).

2. 개호 휴가 제도

개호가 필요한 가족 1명당 1년도에 5일까지, 대상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는 1년도에 10일까지 개호 휴직이나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1일 단위 또는 반일(소정 근로시간의 2분의 1) 단위로 휴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간 단위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3. 개호를 위한 단시간 근무 등의 제도

사업주는 아래 a~d 중 어느 하나의 제도(개호가 필요한 가족 1명당 이용 개시일부터 3년 동안에 2회 이상 이용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a 단시간 근무 제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등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 일수를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 b 플렉스 타임 제도: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정해 두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각자의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일하는 제도입니다.
- c 시차출근 제도: 하루의 근로시간은 변함없이, 소정의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제도입니다.
- d 근로자가 이용하는 개호 서비스 비용의 조성과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4. 개호를 위한 소정 외 근로의 제한 (잔업 면제 제도)

개호가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잔업 면제 제도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 상담창구 등에 대해서

문의처

- 시구정촌의 개호보험 담당과: 개호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개호보험을 이용할 경우의 절차 등
- 지역포괄지원센터: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애로사항이나 개호 예방에 관한 상담 등
-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실): 육아·개호 휴직법에 관한 상담 등
- 헬로 워크(공공직업안정소): 개호 휴직 급부의 신청 절차 등
- 젊은 치매 지원 코디네이터: 젊은 치매에 관한 상담 등

주요 참조사이트 URL

개호 서비스 정보공개 제도	http://www.kaigokensaku.mhlw.go.jp/ 지역포괄지원센터, 개호 서비스 사업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개호 관련 지역 창구	http://www.wam.go.jp/content/wamnet/pcpub/kaigo/madoguchi/ 시정촌의 개호 관련 창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육아·개호 휴직법의 개요	https://www.mhlw.go.jp/bunya/koyoukintou/pamphlet/34.html 육아·개호 휴직 등의 개요,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속 방법 등이 팸플릿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호 휴직 급부에 대해서	https://www.hellowork.go.jp/insurance/insurance_continue.html#g3 개호 휴직 급부의 수급 요건, 신청 방법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호이직 제로 포털사이트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12622.html 개호 서비스 및 개호와 직장을 병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관련 정보 사이트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치매 콜센터	http://y-ninchisyotel.net/index.html 젊은 치매와 젊은 치매 지원에 관한 상담창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